

제천시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 안 번 호	1146
------------------	------

제출년월일 : 2007. . .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제천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지원대상 농업인에 한함(안 제2조)
-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 기금의 사업범위와 사용용도를 정함(안 제4조)
- 기금 운용에 따른 협약체결 및 관리(안 제5조, 제6조)
- 기금의 운용관리 및 계획(안 제5, 6조 제12조)
- 기금 용자 조건 및 회수 등을 정함(안 제14조, 16조)

3. 근거법령 : 불임

4. 의안전문 : 불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첨부 1. 입법예고 사본 1부.

2. 타자치단체 농업발전기금 지원사례 1부.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천시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농업인 등의 범위) 지원대상은 농업인 등으로 하고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독농가, 귀농인
2.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
3. 농업인은 농업, 임업, 축산, 원예, 어업농가 까지 포함.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사업
2.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3. 수출작목 육성사업
4.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사업 및 주산단지 작목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 및 관광농업 육성사업
6.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7. 기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응자금의 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주택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제천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경영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소속 공무원인 농업정책팀장, 농축유통팀장, 기술개발팀장, 산림관리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 지도경제차장
2.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 대표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위원 정원의 1/3 이상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정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3항에 의한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융자금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 대상자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자금은 개인은 5천만원 이내로 하고,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

2. 운영자금은 개인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억원 이내로 한다.

②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③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재 융자 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회수) ①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2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 연장 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감독) ①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자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령

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 2003. 12. 11 법률 제6997호]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책무<개정 2001.3.28>)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영혁신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제17조 (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자문,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업경영체에게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등을 고려하여 농업분야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

1. 영세농등을 위한 지원
2. 토양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6. 기타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6. 12. 20 법률 제8069호]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7 - 373호

제천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3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 농업경쟁력 강화 뒤받침이 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제17조, 제39조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는 소득증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지원대상 농업인 등에 한함(안 제2조).
-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 기금의 사업범위와 사용용도를 정함(안 제4조).
- 기금 운용에 따른 협약체결 및 관리 (안 제5조, 제6조).
- 기금의 운용관리 및 계획 (안 제5, 6조 및 제12조).
- 기금 융자 조건 및 회수 등을 정함(안 제14조, 1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농업정책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 ☎ 641-5300, 5307, FAX 641-5319, E-mail : jobh1634@hanmail.net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타 자치단체 농업발전기금 지원사례

구 분	지 원 한 도 액	지 원 조 건	연 금리	비 고
충 남 부여군	농업인 : 3천만원이내, 생산자단체 : 5천만원이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2%	
경 남 거창군	시설자금:5천만원이하, 운영자금:1천만원이하	3년거치 5년균분상환(시설) 1년거치 3년균분상환(운영)	3%	
경 기 양주시	개인 : 3천만원, 생산자단체 : 1억원 이내	3년거치 5년균분상환	3%	
충 남 연기군	개인 : 3천만원, 생산자단체 : 5천만원 이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2%	
경 남 고성군	농업인 : 5천만원(시설), 3천만원(운영) 생산자단체: 1억원(시설), 5천만원(운영)	규칙(미제정)으로 정한다.		
충 남 당진군	개인 : 5천만원이내, 생산자단체 : 1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2%	
강 원 홍천군	농업인 : 5천만원이내, 생산자단체 : 1억원이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3%	
경기도 농 업 발전기금	농업인 : 5천만원이내	3년거치 5년균분상환	1.5%	
충 북 농어촌 개발기금	시설자금:농업인(5천만원이내), 생산자단체(2억원이내) 운용자금:농업인(3천만원이내), 생산자단체(3천만원이내) 농산물유통안정자금 : 5억원 이내	2년거치 3년균분상환	1.5%	
제천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가구당 2천만원이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2%	